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논현동 639-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www.lh.or.kr

문의전화 1600 - 1004



부담없는 길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서울이 가까워 편리합니다
자연을 누려서 행복합니다

자연을 품은 환경에서 서울의 생활까지 풍요롭게 누립니다

Contents

- 03 프롤로그
- 04 지역조감도 · 교통망도
- 06 지구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 08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 10 세대평형
- 20 동호배치도
- 22 마감재 시설내역 · 입주자 모집공고



▶ 본 팸플릿의 지역조감도,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교통망도,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의 사진·이미지·일러스트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합성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가까워진 서울! 더욱 편리해진 생활! 부천옥길 A1블록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세요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
내일이 더 빛나는 부천옥길 그 가치의 중심이 옵니다.



* 상기 지역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및 주변도로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자연을 두배로 누리는 곳, 부천옥길지구만의 특권입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남부수자연생태공원 ● 1호선 역곡역, 7호선 온수역

단지 인근 대규모 공원과 서울 접근성까지! 서울과 접한 자족도시의 풍요로움을 만나십시오

-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통하는 전철 1호선·7호선 온수역 이용시 편리한 서울 출퇴근
- 서울 외곽순환도로 시흥IC, 제2경인고속도로, 46번국도 등 수도권 연계 쾌속교통망
- 단지 앞 서해안로 이용시 서울구로디지털단지까지 10km 이내 편리한 접근성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수원-광명-서울-문산) 예정
-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예정), 신안산선(안산중양역-여의도-시흥시청-광명역) 예정



* 상기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및 주변도로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과 도심의 편리함이 함께하는 신흥주거지! 부천옥길 A1블록에서 초록도시의 혜택을 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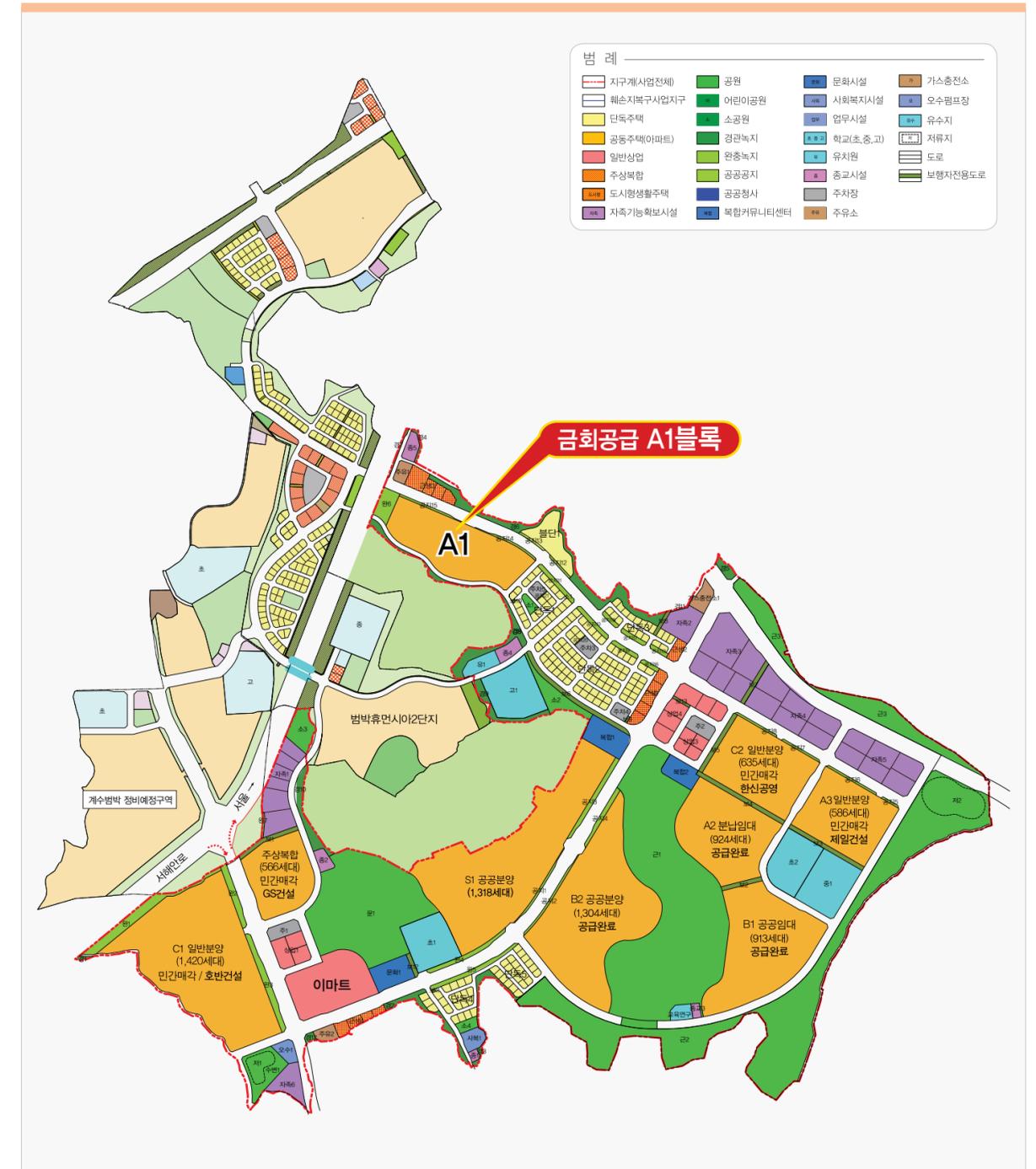
녹지율 약 30%의 쾌적한 자연 환경, 교육 · 쇼핑 · 공원 등 부천옥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주거의 가치를 누리십시오.

- 지구 내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1개소), 고교(1개소) 위치
- 지구 내 이마트(예정) 등 다양한 편의시설 집중
- 인접한 부천범박지구와 서울항동지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 이용 가능
- 청정자연이 살아있는 옥길지구의 높은 녹지율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역곡천, 범박산, 푸른수목원 등과 인접



서울 서남권 신흥 주거타운

항동, 범박, 소사지구와 이어지는 신도시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 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춘 편리한 주거타운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개발계획 및 주변도로 등은 현재 예정 또는 검토 중인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북측의 부광로(광역교통개선대책, 6차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나 향후계획 여건에 따라 선형 및 서해안로와의 접속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우수중계펌프장(준지),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연접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단지! 부천옥길 A1블록에서 자연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풍부한 자연생태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설계로
생활의 여유로움과 쾌적한 단지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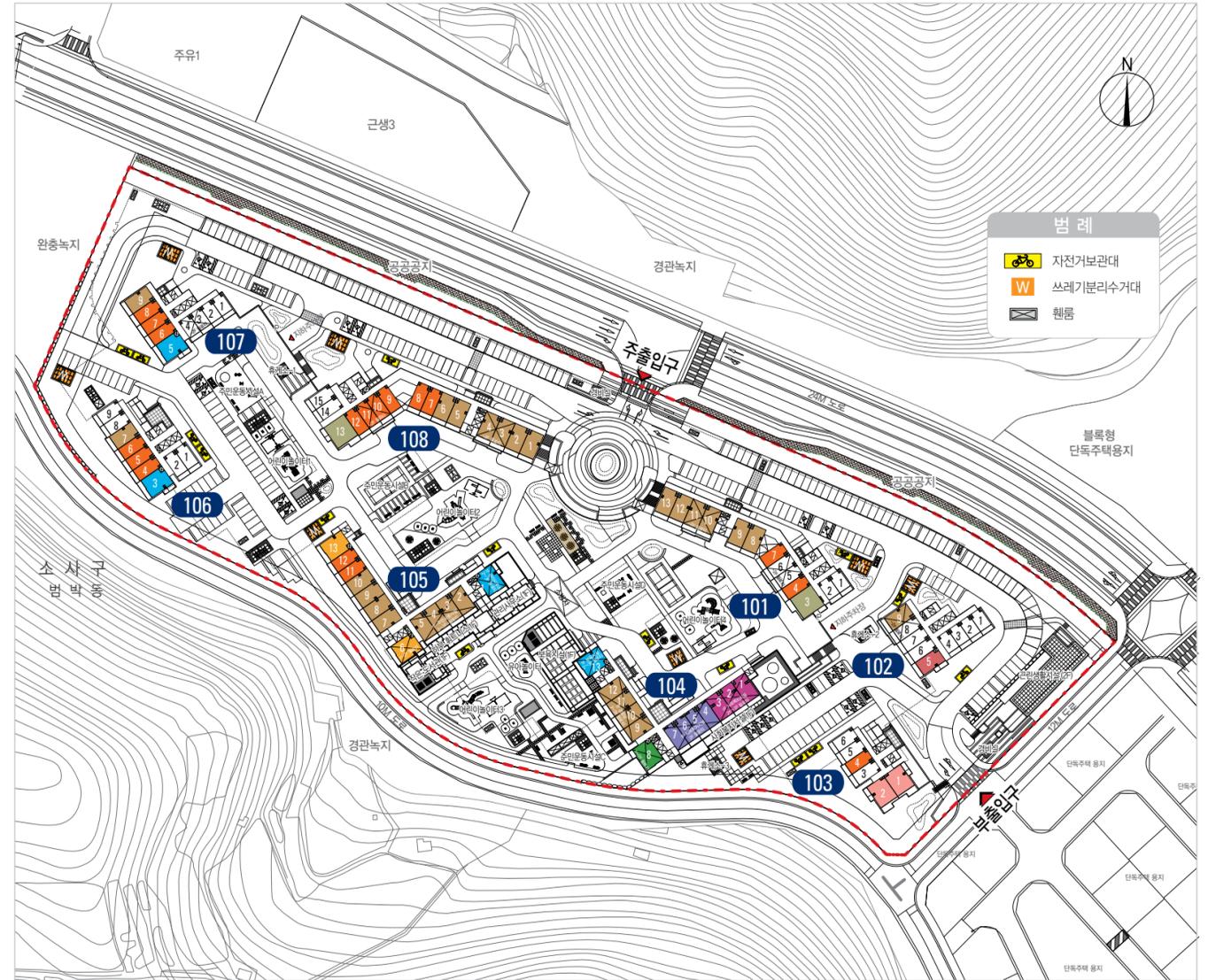
DREAM HOUSING PLAN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의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단지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합니다

- 쾌적한 단지설계 |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 주민운동시설 |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목적 운동공간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 입주민휴게소 |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공간을 조성합니다.



부천옥길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총 916세대

29A/29A1 353세대	36A/36A1 297세대	36B1 23세대	29B 48세대 (고령자형)	36C 33세대 (고령자형)
46A 20세대	46B/46B1 68세대	46C 24세대	55A1 44세대	46D 6세대 (고령자형)

◎ 영구임대 : 538세대 (추후공급) 21A 238세대 26A/26A1 176세대 29A/29A1 124세대

29A

29.6200㎡ / 43세대

29A1

29.7200㎡ / 310세대

29A

주택면적	
전용면적	29.6200㎡
주거공용면적	17.2097㎡
기타공용면적	2.7540㎡
지하주차장면적	11.7754㎡
계약면적	61.3591㎡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1.97㎡
주방 / 식당	13.11㎡
욕실	3.17㎡
현관	1.37㎡
계	29.62㎡

발코니면적	
발코니	6.15㎡

해당동 103동, 105동

29A1

주택면적	
전용면적	29.7200㎡
주거공용면적	17.4679㎡
기타공용면적	2.7632㎡
지하주차장면적	11.8152㎡
계약면적	61.7663㎡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1.97㎡
주방 / 식당	13.19㎡
욕실	3.19㎡
현관	1.37㎡
계	29.72㎡

발코니면적	
발코니	6.18㎡

해당동 101동, 106동, 107동, 108동



고령자형



29B

고령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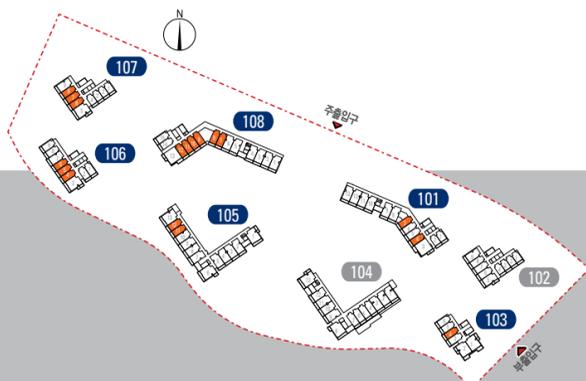
29.9100㎡ / 48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29.9100㎡
주거공용면적	17.2493㎡
기타공용면적	2.7809㎡
지하주차장면적	11.8907㎡
계약면적	61.8309㎡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36㎡
주방 / 식당	8.87㎡
반침	3.33㎡
욕실	3.68㎡
현관	1.67㎡
계	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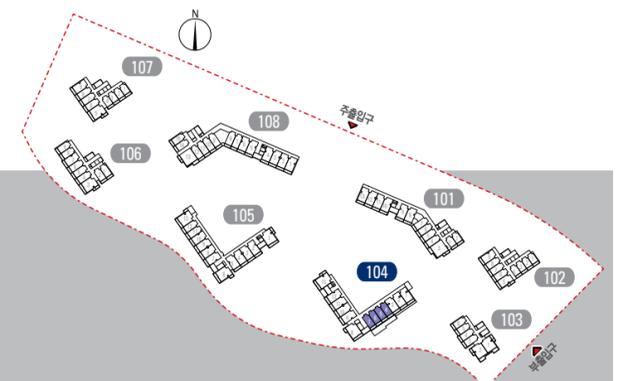
발코니면적	
발코니	6.15㎡

해당동 104동



※ () 치수 29A1 표기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간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29B 고령자형은 습식 욕실로 시공 됩니다.

36A

36.0200㎡ / 104세대

36A1

36.0700㎡ / 193세대

36A

주택면적

전용면적	36.0200㎡
주거공용면적	20.5808㎡
기타공용면적	3.3491㎡
지하주차장면적	14.3197㎡
계약면적	74.2696㎡

실별면적

침실	6.28㎡
거실/침실	14.57㎡
주방/식당	10.11㎡
욕실	3.24㎡
현관	1.82㎡
계	36.02㎡

발코니면적

발코니	7.35㎡
-----	-------

해당동 104동, 105동

36A1

주택면적

전용면적	36.0700㎡
주거공용면적	20.8749㎡
기타공용면적	3.3537㎡
지하주차장면적	14.3396㎡
계약면적	74.6382㎡

실별면적

침실	6.28㎡
거실/침실	14.61㎡
주방/식당	10.02㎡
욕실	3.26㎡
현관	1.90㎡
계	36.07㎡

발코니면적

발코니	7.38㎡
-----	-------

해당동 101동, 102동, 106동, 107동, 108동



36B1

36.0600㎡ / 23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36.0600㎡
주거공용면적	20.6801㎡
기타공용면적	3.3528㎡
지하주차장면적	14.3356㎡
계약면적	74.4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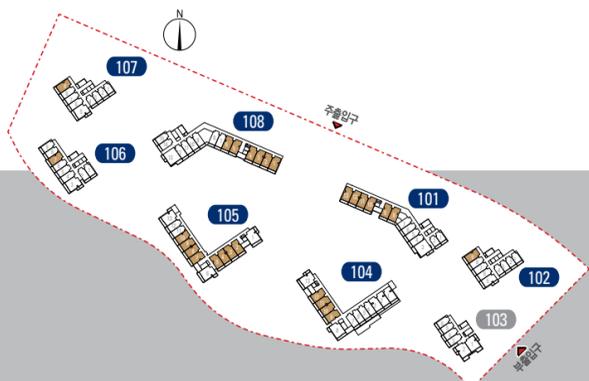
실별면적

침실	6.01㎡
거실/침실	14.61㎡
주방/식당	10.38㎡
욕실	3.28㎡
현관	1.78㎡
계	36.06㎡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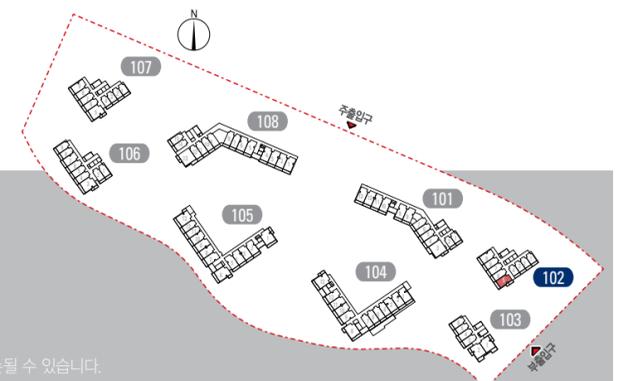
발코니 1	7.38㎡
발코니 2	6.92㎡
계	14.30㎡

해당동 102동



※ ()치수 36A1 표기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방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 대피공간의 창호는 3층이상은 안여닫이,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됩니다.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방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36C

· 고령자형 ·

36.7300㎡ / 33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36.7300㎡
주거공용면적	21.3326㎡
기타공용면적	3.4151㎡
지하주차장면적	14.6020㎡
계약면적	76.0797㎡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5.36㎡
주방 / 식당	11.67㎡
반침	2.80㎡
욕실	4.67㎡
현관	2.23㎡
계	36.73㎡

발코니면적

발코니	7.50㎡
-----	-------

해당동

104동

· 고령자형 ·



46A

46.7600㎡ / 20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46.7600㎡
주거공용면적	26.2313㎡
기타공용면적	4.3476㎡
지하주차장면적	18.5894㎡
계약면적	95.9283㎡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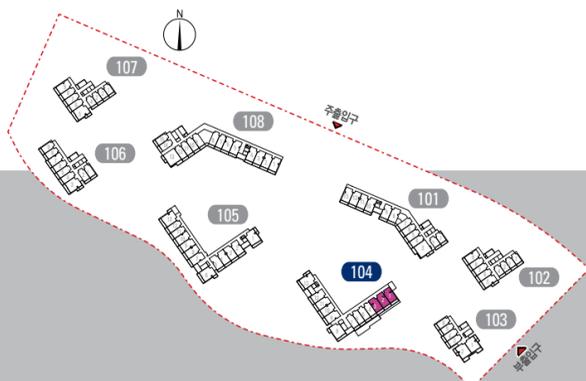
침실 1	10.22㎡
침실 2	7.75㎡
거실	9.36㎡
주방 / 식당	13.17㎡
반침	0.78㎡
욕실	3.58㎡
현관	1.90㎡
계	46.76㎡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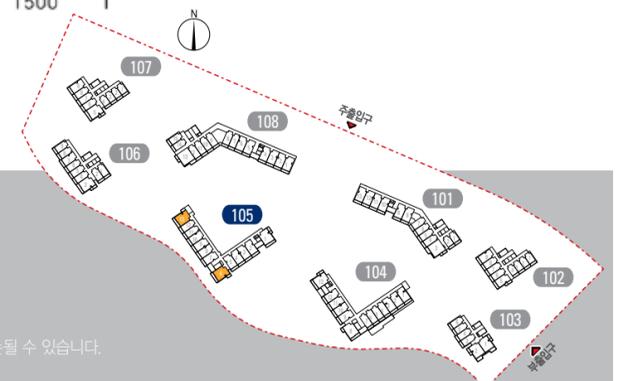
발코니 1	9.74㎡
발코니 2	3.95㎡
계	13.69㎡

해당동

105동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6C 고령자형은 습식 욕실로 시공 됩니다.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46B

46.7600㎡ / 1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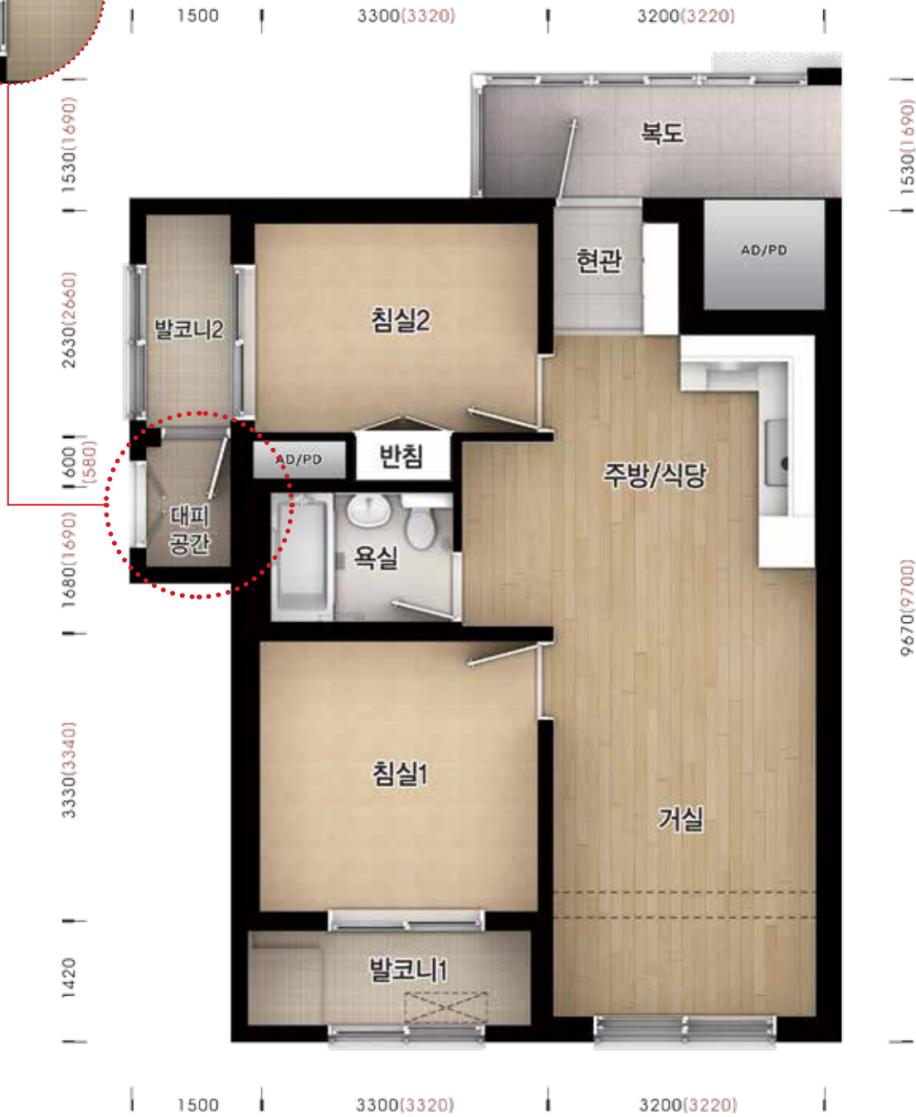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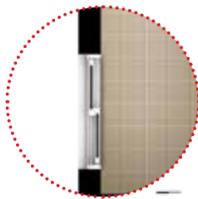
46B1

46.9100㎡ / 5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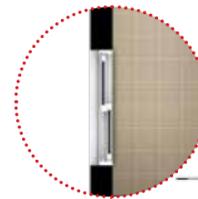
46B	
주택면적	
전용면적	46.7600㎡
주거공용면적	26.2313㎡
기타공용면적	4.3476㎡
지하주차장면적	18.5894㎡
계약면적	95.9283㎡
실별면적	
침실 1	10.22㎡
침실 2	7.75㎡
거실	9.36㎡
주방 / 식당	13.17㎡
반침	0.78㎡
욕실	3.58㎡
현관	1.90㎡
계	46.76㎡
발코니면적	
발코니 1	9.74㎡
발코니 2	6.35㎡
계	16.09㎡
해당동	104동, 105동

46B1	
주택면적	
전용면적	46.9100㎡
주거공용면적	26.6035㎡
기타공용면적	4.3616㎡
지하주차장면적	18.6491㎡
계약면적	96.5242㎡
실별면적	
침실 1	10.28㎡
침실 2	7.78㎡
거실	9.42㎡
주방 / 식당	13.19㎡
반침	0.74㎡
욕실	3.59㎡
현관	1.91㎡
계	46.91㎡
발코니면적	
발코니 1	9.80㎡
발코니 2	6.44㎡
계	16.24㎡
해당동	106동, 107동

• 1~2층 (미서기창)



• 1~2층 (미서기창)



4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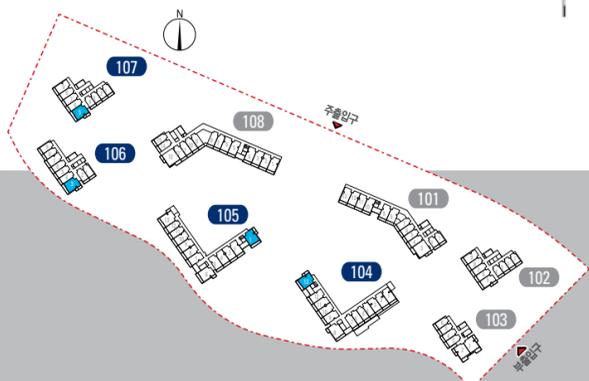
46.3900㎡ / 24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46.3900㎡
주거공용면적	26.0232㎡
기타공용면적	4.3133㎡
지하주차장면적	18.4423㎡
계약면적	95.1688㎡

실별면적	
침실 1	8.64㎡
침실 2	8.40㎡
거실	8.37㎡
주방 / 식당	14.96㎡
반침	0.72㎡
욕실	3.41㎡
현관	1.89㎡
계	4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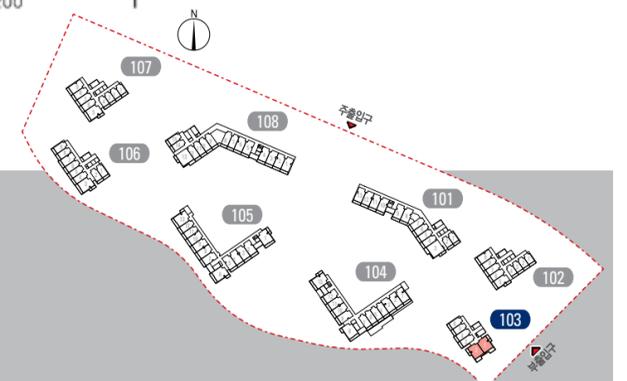
발코니면적	
발코니 1	9.58㎡
발코니 2	6.72㎡
계	16.30㎡

해당동
103동



※ ()치수 46B1 표기

- ※ 대피공간의 층고는 3층이상은 안여달이,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됩니다.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 대피공간의 층고는 3층이상은 안여달이,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됩니다.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46D

고령자형

46.7100㎡ / 6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46.7100㎡
주거공용면적	26.3072㎡
기타공용면적	4.3430㎡
지하주차장면적	18.5696㎡
계약면적	95.9298㎡

실별면적

침실 1	10.22㎡
침실 2	7.86㎡
거실	9.36㎡
주방/식당	12.65㎡
욕실	4.72㎡
현관	1.90㎡
계	46.71㎡

발코니면적

발코니 1	9.74㎡
발코니 2	3.95㎡
계	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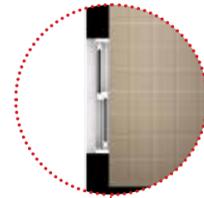
해당동

104동

고령자형



1~2층 (미서기창)



55A1

55.6100㎡ / 44세대

주택면적

전용면적	55.6100㎡
주거공용면적	31.7319㎡
기타공용면적	5.1705㎡
지하주차장면적	22.1078㎡
계약면적	114.6202㎡

실별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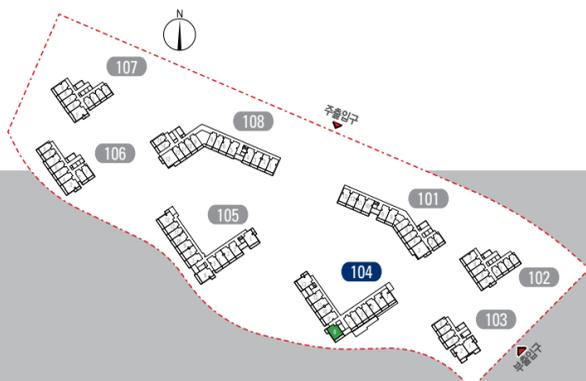
침실 1	10.21㎡
침실 2	7.22㎡
침실 3	7.27㎡
거실	11.67㎡
주방/식당	11.94㎡
반침 1	0.64㎡
반침 2	0.93㎡
욕실	3.59㎡
현관	2.14㎡
계	55.61㎡

발코니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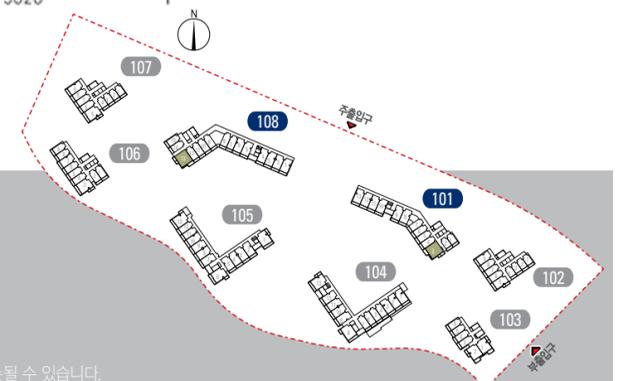
발코니 1	9.57㎡
발코니 2	6.66㎡
계	16.23㎡

해당동

101동, 108동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46D 고령자형은 습식 욕실로 시공 됩니다.



- * 대피공간의 창호는 3층이상은 안여닫이,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됩니다.
- *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x0.3025=평)
- * 본 평면도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로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의 배치 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현관문은 E/V실을 기준으로 개폐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욕실은 조립식 건식 욕실로 시공되므로 욕실내 벽면 등에 추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멍을 뚫을 경우 벽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부천옥길 A1블록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

품 목		시설내용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일반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	
	바닥	자기질 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	
	신발장	설치	
거실 / 주방	벽지 / 천정지	실크벽지 / 발포천정지	
	바닥	장판지	
	주방벽	도기질타일	
	주방가구	문짝 상판	인테리어쉬트 인조대리석(BMC)
침실	바닥	장판지	
	벽지 / 천정지	실크벽지 / 발포천정지	
	반침가구	설치(29B, 36C, 46C, 46B, 46B1, 55A1)	
	침실문틀 / 문짝	인테리어쉬트	
욕실	벽	도기질 타일	- 조립식 건식 욕실 - 고령자세대(87세대): 습식욕실
	바닥	자기질 타일	
	천정	PVC판넬	
비확장 발코니	바닥	자기질 타일	
	내부창호	합성수지창호	
	발코니샷시	설치	
복도	복도창	설치	
주방설비	레인저후드	설치	
난방설비	온도조절기	거실 및 각 침실	
위생설비	욕실	세면기	도기질(백색)
		양변기	도기질(투피스형)
		욕조	SMC
		욕조수전	일반헤드
		거울수납장	설치
		기타설비	휴지걸이, 선반
	발코니 세탁실	세탁기용 수전	온수, 냉수(2구형 : 일반형 + 물뿌리기)
조명설비	각실 조명기구	아크릴급	
	식탁등 / 거실, 침실등	LED급 / 일반램프	
배선기구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적용(1등급)	
	화장실 비상콜	설치(고령자세대)	
	비디오폰	설치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부천옥길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5. 9. 24.]

번거로운 신청서류 간소화 ~ 청약을 쉽고 빠르게 ~

부천옥길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의 소득·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접수대기시간 소요와 혼잡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현장접수만 가능한 경우 : 고령자전용주택 신청자, 기관추천대상자(당해지구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 공급유형별(우선, 일반 또는 고령자 전용) 및 신청순위별(1,2,3순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접수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인터넷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선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5.10.29(목) ~ 10.30(금), 11.2(월) 10:00 ~ 16:00)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



○ 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일원 부천옥길지구 A1블록 국민임대주택 916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층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에 공용면적		합계	해당동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	고령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29	29A1	29.72	17.4679	2.7632	11.8152	61.7663	353	-	299	54	101, 103, 105~108	13,000	2,600	10,400	156,000	벽식, 지역난방	2016년 10월
	29A	29.62	17.2097	2.7540	11.7754	61.3591											
29 고령	29B (고령)	29.91	17.2493	2.7809	11.8907	61.8309	48	48	-	-	104	15,700	3,140	12,560	198,000		
36	36A1	36.07	20.8749	3.3537	14.3396	74.6382	320	-	267	53	101, 102, 104~108						
	36A	36.02	20.5808	3.3491	14.3197	74.2696											
36B1	36B1	36.06	20.6801	3.3528	14.3356	74.4285	33	33	-	-	104	34,700	6,940	27,760	259,000		
	36C (고령)	36.73	21.3326	3.4151	14.6020	76.0797											
46	46A,B	46.76	26.2313	4.3476	18.5894	95.9283	112	-	91	21	103~108	41,900	8,380	33,520	296,000		
	46B1	46.91	26.6035	4.3616	18.6491	96.5242											
46C	46C	46.39	26.0232	4.3133	18.4423	95.1688	6	6	-	-	104						
	46D (고령)	46.71	26.3072	4.3430	18.5696	95.9298											
55	55A1	55.61	31.7319	5.1705	22.1078	114.6202	44	-	37	7	101, 108						

- * 이번 모집시 부천옥길 A1블록 국민임대주택만 대상이며 A1블록내 영구임대주택은 추후 모집예정입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목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적으로 고령자용 주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형 주택 신청가능)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9. 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중복신청 불가)

- ① 세대주
-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4인가구	3,314,22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인이상가구	3,657,250원 이하	
			3,892,010원 이하	
자산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고령자는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세부내역 별첨</p>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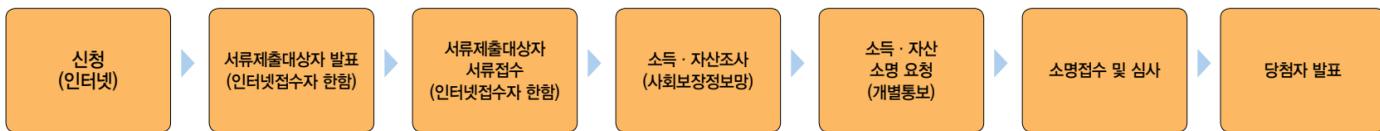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접수, 서류제출, 계약 등)		
			일자	시간						
우선공급			2015.10.12(월)		2015.10.22(목) 16: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2015.10.29(목)~ 2015.10.30(금), 2015.11.2(월) 10:00~16:00	2015.12.16(수) 17:00 이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ARS(1661-7700) 확인	2015.12.28(월) ~ 2015.12.30(수)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논현동 639-1)		
전용 50㎡ 미만	1순위	일반공급	2015.10.12(월)							
		고령자	2015.10.13(화)							
	2순위	일반공급	2015.10.14(수)							
		고령자								
	3순위	일반공급								
		고령자								
29 29고령 36 36고령 46 46고령	1순위	일반공급							2015.10.15(목)	
		고령자								
	2순위	일반공급								
		고령자								
	3순위	일반공급								
		고령자								
전용 50㎡ 이상	1순위	일반공급	2015.10.13(화)							
	2순위	일반공급	2015.10.14(수)							
	3순위	일반공급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고령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고령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 고령자용 주택 신청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5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정호수

구분	세대	고령자	일반공급	계	우선공급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사업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29	48	54	299	35	11	7	15	3	3	3	3	7	11	7	35	35	11	7	106	
36	33	53	267	32	9	6	12	3	3	3	3	6	9	6	32	32	9	6	96	
46	6	21	91	11	3	2	4	1	1	1	1	2	3	2	11	11	3	2	33	
55	-	7	37	4	1	1	1	1	1	1	1	1	1	1	4	4	1	1	13	

일반공급 및 고령자용 주택공급

구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367,300원 이하	3,314,220원 이하
	4인	2,612,320원 이하	3,657,250원 이하
	5인이상	2,780,010원 이하	3,892,010원 이하
전용면적 50㎡이상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중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봄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당해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고령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고령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당해지역 (시·군·자치구)거주자 →	고령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재(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경쟁에 의해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지수는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고령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고령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철거민,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4항 ~ 제8항」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6 신청서류 (2015년 9월 24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기관추천대상자 등 부득이한 경우) : 접수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임신진단서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p>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l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5001184 * 현장 접수자에 한하여 제출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외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재단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단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동일부 (이산가족과)	
⑳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㉑ 「국군포로의 승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㉒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u>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u>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 ~ 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기업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⑩ 주택청약종합저축(중진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순위확인서류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5.12.28(월) ~ 12.30(수) 10:00 ~ 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입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할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북측으로 서울함동공공주택지구(SH공사) 건설 예정이며, 남서측으로 계수·범박주택재개발지구(민간조합)가 사업추진중임 - 지구에서 직선거리 3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7호선 운수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측 약 1.5km에 서울푸른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동측으로 광명스파돔, 남측으로 과림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동측 경계로부터 약 900m 거리에 부천시 환경기초시설(남부수자원 생태공원 지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증설 공사중임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측으로 역곡천(하천 정비 기 완료)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곡천을 따라 철도(군용)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 동측 역곡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서해안로(6차로)로 인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북측의 부광로(광역교통개선대책, 6차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나 향후 계획 여건에 따라 선형 및 서해안로와의 접속 여부가 변경될 수있음 - 지구 내 우수중계펌프장,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남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	------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부천옥길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에 공공공지, 북서측으로는 완충녹지가 연결해 있으며, 단지 남서측으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관녹지 및 기존산림이 인접해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8~28층 규모임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일부세대는 확장으로 임대함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석재뿔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 돌블임 등으로 마감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
- 아파트(101동 1~2층 5, 6, 10, 11호라인, 102동 1~2층 8, 9호라인, 104동 B1F~2층 전체, 3층 1~3호 및 9~13호라인, 105동 1~2층 1~6호라인, 3층 1~5호라인, 107동 1~2층 3, 4호라인, 108동 1~2층 3, 4, 10, 11호라인) 저층부에 필로티, PIT,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보육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평형은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 및 도장방화문이 시공되며, 3층에서 10층세대까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되고 3층에서 최상층 세대의 외부창호 형태가 1~2층세대 창호와 상이함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통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되어 있음
- 복도 천장 일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107동), 피뢰침(각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PIT)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104동 남측), 기계실(열교환실)(101동, 104동 사이, 106동 동측), 펌프실(101동 남측), 지하저수조(101동, 104동 사이), 팬룸(106동 서측), 아파트 PIT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저수조 및 전기실/발전기실 설치 위치: 자세한 위치는 팜플렛 참조)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1층 및 저층세대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주차장출입구 107~108동 사이, 101동 동측)을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진조 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 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표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통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임면 물당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임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그·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울벽, 조경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 5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차대수는 총 880대(지상주차 근린생활시설 : 5대, 지하주차 공동주택 : 633, 지상주차 : 242대)이며, 이중 40대는 장애인 주차장임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과 지하2층이 연결된 구조로써 각종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통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구 및 단지여건



관련항목	유의사항
------	------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타라이트)이 설치되며 단지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동별 1대 이상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님
- 주민공동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부에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내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팜플렛 단지배치도 참조)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보관소,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지구 및 단지여건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경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
- 벽걸이 TV 고정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신발장 내부 및 침실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등이 설치되며 신발장 허부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
- 고령자세대를 제외한 전 평형 욕실 내 바닥에는 난방이 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발코니 내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천정형으로 설치되나 최상층 세대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바닥물청소시, 결로수발생시 주의가 필요함
- 주방가구, 반찬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가구, 타일, 식재, 바닥,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이,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체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티입벨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위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충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관련항목 **유의사항**

■ 지구내 학교 개교 시기

학교급별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2개소)	초1	옥길산들초	2016. 09
	초2	옥길버들초	-
중학교(1개소)	중1	옥길중	-
고등학교(1개소)	고1	옥길고(가칭)	미정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불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 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발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지구 및 단지여건

-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성능 부분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① ② ③ ④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① ② ③ ④
		화장실 급배수소음	① ② ③ ④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① ② ③ ④
구조 관련 등급	가변성	전용부분	① ② ③ ④
		수리용이성	① ② ③ ④
환경 관련 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① ② ③ ④
		자연지반복지율	① ② ③ ④
		연계된 녹지축 조성	① ② ③ ④
	세대내 일조 확보율		① ② ③ ④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지원의 분리수거	① ② ③ ④
		음식물 쓰레기 저감	① ② ③ ④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① ② ③ ④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① ② ③ ④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① ② ③ ④
에너지 절약	에너지 성능	① ② ③ ④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① ② ③ ④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① ② ③ ④	
생활 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 공간의 조성수준		① ② ③ ④
		보행자도로	① ② ③ ④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① ② ③ ④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① ② ③ ④
	교통부하저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① ② ③ ④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① ② ③ ④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효율적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문서및지침제공의 타당성	① ② ③ ④	
	사용자 매뉴얼 제공	① ② ③ ④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공정진행상 설치불가항목이 발생하여 아래 편의시설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동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본사 종합민원센터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2015. 9. 24

